

(2017. 8. 26 시행) 국가직 7급 기출문제 [헌법(가 책형) 해설]

[송 재 필 선생님]

제일고시학원(중앙로점/충남대점) www.okpass.com

1.

정답] ④

해설] ①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에 대한 규정은 9차 개헌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② 9차 → 8차

③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전문의 3.1정신으로부터 어떤 기본권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99헌마139). 이와는 달리,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99헌마139). 즉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설문 중 앞부분은 틀렸고 뒷부분은 옳다.

④ 헌법은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2004헌마859).

2.

정답] ②

해설] ①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92헌바6).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볼 수 없다.

③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에 국제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에 의한 문서를 지칭한다. 즉 조약은 명시적인 합의이어야 하므로 서면형식을 필요로 한다.

④ 헌법 제60조1항의 국회동의를 얻어 비준된 조약은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다수견해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

정답] ①

해설] ①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2003헌가1).

② 헌법 제9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2003. 1. 30. 2001헌바64).

③ 헌법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거의 어느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2001헌가9).

④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관습화된 문화요소, 특히 예수나 석가의 탄신일과 같은 종교적인 의식, 행사에서 유래된 경우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문화국가원리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정답] ③

해설] ③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2007헌마369).

5.

정답] ③

해설] ㄷ.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2015. 4. 30. 2013헌마623).

6.

정답] ②

해설] ②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청구인(고등학생 등)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원조례조항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여 평등권이 침해되

었다고 볼 수는 없다(2016. 5. 26. 2014헌마374).

7.

정답] ④

해설] 나.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는 있어서 ‘피해의 최소화’ 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 보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2005. 10. 27. 2003헌가3).

ㄷ.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외에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도 지는 입법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보건·건강권 모두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본권들 간의 균형을 기하는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006헌바75).

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밖 ×)에 있다. 따라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의견(95헌가16)을 변경하는바,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2006헌바109).

8.

정답] ①

해설] ②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16. 7. 28. 2015헌마236·412·662·673).

③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97도3349).

④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2016. 9. 29. 2014헌가9).

9.

정답] ③

해설] ③ 구치소장이 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한 행위는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010헌마153).

10.

정답] ①

해설] ㄷ.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2015. 3. 26. 2013헌마214·245·445·804·833, 2014헌마104·506·1047).

ㄴ. 비록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까지 법률구조의 요청을 할 수는 없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2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11.

정답] ④

해설] ①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② 한국헌법(제53조)은 미국헌법(제9조)과 달리, 국회가 임기만료로 폐회된 경우에도 환부하지 않고 보류거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해석적으로 보류거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학설이 다투어 지지만, 긍정설보다는 부정설을 다수설로 볼 수 있다.

③ 일부거부든 수정거부든 허용되지 않는다(헌법 제53조3항).

☞ 헌법 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15일)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12.

정답] ①

해설] ① 1) 헌법이 “행정각부”의 의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지만, “행정각부의 장(長)”에 관하여는 “제3관 행정각부”의 관(款)에서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되며(헌법 제94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행정각부”의 의의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그 개념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그 기관의 장(長)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 볼 수 없다는 헌법상의 간접적인 개념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곧 헌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행정각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입법권자는 헌법 제96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86조 제2항 및 제94조에서 말하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는 입법권자가 헌법 제96조의 위임을 받은 정부조직법 제29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89헌마221).

13.

정답] ③

해설] ③ 법관의 정년을 설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위와 같은 헌법상 설정된 법관의 성격과 그 업무의 특수성에 합치되어야 하고, 관료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계층구조적인 일반 행정공무원과 달리 보아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고위법관과 일반법관을 차등하여 정년을 설정함은 일응 문제가 있어 보이나, 사법도 심급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과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 이유를 감안하여 볼 때, 일반법관의

정년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보다 낮은 63세로, 대법관의 정년을 대법원장보다 낮은 65세로 설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큼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002. 10. 31. 2001헌마557).

14.

정답] ①

해설] ① 미신고 또는 누락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요건이 성립된 시점인 상속이 개시된 때가 아니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은 헌법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1992. 12. 24. 90헌바21). 즉, 1988.12.26. 개정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생략 ② 제20조에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은, 첫째로 조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인 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의 기초에서 있는 헌법 제38조·제59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고, 둘째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과세 내지 차별대우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주의는 물론,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법률의 근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를 막자는 의미의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 규정에도 위반된다(1992. 12. 24. 90헌바21).

15.

정답] ④

해설] ㄴ. 군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문서 및 부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헌법 제82조).

ㄷ. 헌법재판관 9인은 모두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의 관장기관이 다른 바,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만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관장하며, 대법원장의 지명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6인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관장한다(국회법 제46조의3, 제65조의2).

ㄹ. 대통령이 재직 중 사퇴한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리의 정지 및 제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동법 제7조).

☞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예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2.4.>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人事聽聞會"라 한다)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12.3.21., 2014.3.18., 2014.5.28.>

1.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예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
3.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5.28.>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16.

정답] ②

해설] ②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54조2항).

☞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정답] ③

해설] ① 의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아니라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국회법 제12조).

② 의원 10인 이상 → 의원 20인 이상(국회법 제77조)

④ 투표의 집계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는 물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국회부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 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국회법 제92조)에 위배하여 청구인(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2008헌라7).

☞ 국회법

제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18.

정답] ③

해설] ㄴ. 재판의 전제성요건의 판단은 제청법원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고 헌법재판소 또한 이를 존중하여 별도의 전제성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다음 절차로 넘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 전제성요건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직권으로 전제성요건을 판단하여 법원의 판단을 번복하여 재판절차를 각하할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이든 위헌소원심판(헌바)사건이든 다를 바가 없다(92헌가10, 2009헌바234).

19.

정답] ①

해설] ②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대법원규칙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89헌마178).

③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96헌마172).

④ 헌법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다(제107조2항). 한편 행정소송법에서 이와 달리 재판의 전제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이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심사를 담당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0.

정답] ④

해설] 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지방자치법 제55조2항)

☞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